

호주의 식품회수제도

유 화 춘 / 한국식품위생위연구원 식품위생연구부

필자주 : 본고는 199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결과 보고서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식품공업”제134호(1996년 5월호)에 실렸던 “미국의 식품회수제도”에 이어서 호주의 식품회수제도를 소개한다.

서 론

정부는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식품행정 쇄신대책으로 종전의 사전통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종전의 사전관리와는 달리 사후관리는 기업 스스로 자사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위해식품을 자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사후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식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해식품으로 판명되었을 때 생산자, 유통자 등의 영업자가 문제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 폐기하여 소비자를 위해식품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존의 압류, 폐기의 제재보다 중요한 소비자의 보호수단이 되고 있는 회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식품회수(Recall)제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위해식품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서,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자진회수와 강제회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호주의 식품회수제도는 미국의 식품회수제도와는 달리 회수시행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발적 회수와 더불어 강제회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식품회수제도보다는 호주의 식품회수제도가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호주식품회수제도의 정책, 회수관련법, 회수전략요소, 그리고 식품회수절차를 알아 본다.

I. 호주의 식품회수제도 개요

호주의 식품회수제도는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이 판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또는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며, 호주의 자발적회수와 강제회수는 1986년 호주거래법(Trade Practices Act

1974)개정안에 그 제도가 마련되었다.

미국과는 달리 호주는 자발적인 회수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도 식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의 각 주(州)마다 식품을 다루는 법에 강제적으로 위해 식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법적근거와 해당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호주의 국립식품청(National Food Authority; NFA)은 식품회수를 전반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책임은 보통 국립식품청의 임원인 연방조정관(Australian Commonwealth) Coordinator)에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품공급에 대한 최초의 책임을 갖는 제조업체, 도매상 또는 유통업체가 회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주요 책임을 가지며 모든 비용은 이들에 의해 부담된다.

이러한 제품공급에 대한 최초의 책임을 갖는 개인, 사업자, 회사 또는 제조업자를 스폰서(Sponsor)라고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스폰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들 스폰서는 회수를 이행하는데 실제적인 책임을 가지며 회수조치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연방조정관과의 협력하에 회수를 이행하며 회수진행에 대한 중간보고서와 회수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연방조정관에게 제출한다.

호주국립식품청은 식품산업계에 회수조치를 위한 일관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1994년 7월 식품회수지침서(Food Recall Protocol)를 마련하였고 현재 이 지침서는 식품산업체와 각 주/지방정부의 보건국에 널리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마련된 전국표준식품회수시스템(A Uniform National Food Recall system)에는 회수시행 전반에 관한 여러사항들이 새롭게 정리·보완되었다.

II. 호주의 식품회수정책

1. 호주국립식품청(NFA)의 역할

식품을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 회수담당기관의 역할은 회수상황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호주국립식품청은 식품

회수에 관해서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영업자에게 위대한 식품을 회수하게 하는 강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식품의 회수를 조정하기 위해 호주거래법(Trade Practices Act 1974)의 제7(h)조와 제7(i)조는 호주국립식품청에 산업체, 연방소비자국(the Federal Bureau of Consumer Affairs)과 주/준주 보건과(State and Territory health departments)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국립식품청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전국적인 회수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게 회수를 평가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회수지침을 개발하며, 정부, 산업체, 소비자단체와의 협의 하에 식품회수 절차와 관련된 대중 정보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다.

2. 호주검역검사국(AQIS)의 역할과 책임

호주검역검사국(Australian Quarantine Inspection Program; AQIS)은 수입식품 검사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호주국립식품청에 의해 분류된 위해식품은 호주국립식품청의 충고에 따라 모든 위탁제품의 100%나 50% 검사를 받는다.

항구에서 검사 결과가 호주검역검사국의 검사관에게 돌아올 때까지 선적분은 저장된다. 만일 선적이 되지 못한다면 호주검역검사국 승인에 따라 폐기되거나 재수출될 수 있고 식품 규격을 따르는 다른 제품이 되도록 재작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식품이 규정에 따라 승인되고 소매판매와 유통을 위해 방출되기 전에 항구에서 취해진 조치는 기록되어야 한다. 호주검역검사국에 의해 이러한 자료는 월(月) 단위로 수집되고 호주국립식품청으로 정보가 보내진다.

모든 다른 선적은 “검사후 방출”방식에 따라 모든 선적의 5%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받는다. 식품이 이미 소매상으로 방출되어 유통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항구에 있는 호주검역검사국의 검사관은 호주검역검사국의 수입식품 검사프로그램 매니저와 호주검역검사국과 지방의 보건국에 알린다. 그

리고 회수 네트워크는 수입식품 검사제도를 통해 호주검역검사국에 의해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할 때 이용되고 있다.

3. 식품회수지침서

대중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해식품이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거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거될 때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호주 국립식품청은 식품산업체가 회수 수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식품회수지침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품회수 계획의 개발, 조정관에 통고, 소비자부 장관에게 통고, 회수를 평가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 회수활동, 보고서, 제품회복, 사후조치.

호주국립식품청과 국립식품청위원회(National Food Authority Advisory Committee; NFAAC)회원사이에 합의된 식품산업체를 위한 지침으로서 1994년 7월 식품회수지침서(Food Recall Protocol)가 간행되었고, 이 지침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이유로 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제거해야 할 단계 등 회수저치를 위한 일관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식품산업체와 호주 각주의 보건과에 널리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립식품청자문위원회(National Food Authority Advisory Committee; NFAAC)는 1995년 5월에 개최되었던 8번째 회의에서 호주의 일부 주(州) 즉 Queensland(Chair), NSW, Victoria, ACT와 호주국립식품청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반을 설립했으며 표준화된 전국회수체계를 추진하는데 동의하였다. 그 후에 국립식품규격위원회(National Food Standard Council(NFSC))는 1995년 6월에 개최된 Alice Springs에서의 모임에서 표준화된 전국회수체계를 개발하는데 찬성하여 국립식품청자문위원회와의 협정을 승인했다.

작업반은 식품의 회수를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재검토하고, 현재 산업체가 사용하는 식품회수지침을 재검토하며, 회수담당기관을 위한 회수절차를 입안하여, 표준화된 전국회수체계를 국립식품청자문위원회에 권

고할 준비작업을 하였으며, 최근에 마련한 전국표준식품회수시스템(A Uniform National Food Recall System)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새롭게 정리·보완되었다.

4. 조정관의 책임

가. 연방조정관(Australian coordinator)

식품회수에 관한 연방조정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스폰서 회사에 현재 회수 조정관의 목록을 비치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정한 다음 각 주/지역 조정관에게 이 유용한 목록사본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요구시 모든 식품스폰서에게 일치된 식품회수절차의 사본을 제공한다.

3) 회수가 필요한 스폰서의 제품의 모든 위해 가능한 식품의 통고를 즉시 스폰서에게 권고한다.

4) 회수가 착수되는 주/지역 제조업체에서는 조정관과 연락한다. 회수의 집행에 관해서는 다른 주/지역 조정관에게 통보하며 연락한다.

5) 소비자에게 위험할지 모르는 지역의 회수 실시와 분류에 관한 전문적 조언을 구한다.

6) 조정관은 회수에 관해 스폰서와 연락할 것이며 회수문, 광고문 그리고 회수전략에 관하여 조언과 협조를 한다. 스폰서는 제3자를 권고시, 조정관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를 알려야 한다.

7) 위험이 인정된 경우 소비자를 포함하는 회수에서 매체(주요 소수 민족 매체를 포함)에 의한 즉각적인 사용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 스폰서와 관련 주/지역 조정관과 연락한다. 이런 문장들은 유급광고의 공표에서 며칠씩 지체될지도 모르는 소비자의 주의를 가능한 한 빨리 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매체 진술은 어떤 대중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이루어진다.

8) 필요할 경우 회수 조치시 연방소비자국 직원과 연락한다.

9) 수출한 호수산 식품이 회수대상인 경우, 결정을 위하여 스폰서와 연락한다.

· 수출 상품에 대한 회수 전략

• 다른 나라의 보건 당국에 회수에 대한 권고 형태

10) 연방 소비자국에 스폰서의 회수보고의 사본과 관련 서류의 사본을 발송한다.

11) 회수요약이 담긴 전자데이터베이스와 개개의 회수에 대한 상세기록을 유지한다.

12) 호주국립식품청의 회의에서 재검토를 위한 모든 회수의 요약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13) 수입된 식품에 대해 조정관은 식품의 수입업자와 연락한다. 호주 검역소와 검사부는 상품의 수출업자와 연락해야 한다. 위해평가는 호주국립식품청과 호주 검역소 그리고 검사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는 위해평가 요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나. 주/준주 조정관(State/Territory coordinators)

주/준주 조정관은 제품 보고서, 회수조치 정보를 연방 조정관에게 회부할 책임을 갖는다. 그 주/준주에서 제안된 회수, 그리고 회수 효과 검토를 연락할 책임을 갖는다.

주/준주 조정관에게 보고되는 사항은 만약 주/준주 조정관의 의견에서 회수가 선택된다면, 지체없이 연방조정관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안된 회수에 관하여 스폰서로부터의 충고 또한 연방조정관에게 송부한다.

주정부 신청에 의한 감시에서 주/준주 건강당국에 의해 발견되는 결함 제품은 연방 조정관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주/준주 조정관은 주/준주에서 다른 관련 조직(예. 호주식품공업협회 AFTA)에 소비자수준의 회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스폰서의 본사가 있는 곳에서는 주/준주 조정관은 회수 또는 수정된 결함 제품의 비율, 그리고 더 깊숙하고 상세한 관심사를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회수의 결론적 의미에서 지방 조정관은 회수된 제품의 파손을 감독하여 그 제품이 관련된 주, 또는 지역 건강국의 만족도를 파괴하여 온 것을 증명하는 진술을 내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5. 스폰서(영업자)의 책임

스폰서는 회수기록을 유지하고 회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절차를 확립하며 회수를 이행하는 데 주요책임을 갖는다.

가. 기록(Records)

모범제조규범규정에 따라 스폰서는 제조된 제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록을 보존하는 시스템은 원재료에서 최종 제품의 모든 벅취에 대한 완전하고, 최근 이력의 기록들이 포함되고, 모든 원재료와 벌크 제품의 사용 및 폐기의 결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적절한 기록들은 최종 제품이 판매, 유통되는 고객에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보해야 한다.

호주식품규격규정집의 Standard A2에 따른 기록유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Very Short Life Foods- 제조에 관한 총체적 기록은 벅취의 완료후 적어도 1년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2) Longer Life Foods- 제조에 관한 총체적 기록은 벅취의 완료후 적어도 1년 동안은 유지되어야 한다.

3) 2년 이상의 유통기한을 갖는 식품- 제조에 관한 총체적 기록은 제조일로부터 적어도 5년은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스폰서는 회수되는 제품에 대해 접수된 불만기록을 유지하며, 불만 사항은 자격을 갖춘 사람 및 취하여진 적절한 조치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각 불만 사항과 취하여진 조치의 평가는 기록상으로 나타내야 한다.

모든 기록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마다 회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한다.

나. 스폰서의 회수절차

상기 진술에 따라 Sponsor는 그들의 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회수 조치를 위한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모든 경영진은 제품에 대한 기록 시스템과 절차에 관한 그들의 책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스폰서는 NFA (National Food Authority)의 연방조정관에게 그들의 제품회수 계획의 사본을 제출한다. 당국은 오로지 각 회사에 대해 회수에 관련된 세부 사항의 제기를 권장한다.

세부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회사명
- 담당자 이름과 지위
- 주소 및 24시간 가능한 전화번호/FAX 번호
- 회사에 의해 스폰서 되는 식품의 형태 및 관련된 표시

다. 사전회수

제품평가에서 회수가 필요할 경우 연방조정관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통보받는다.

라. 회수

스폰서는 회수 이행 및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에 따라 확인할 주요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수준에 관계없이 어떤 회수도 관련된 보건당국과의 협의없이, 그리고 회수 전략에 관한 동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에게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회사 직원은 즉시 회수에 대한 정부를 유포시킬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회수보류 또는 회수가능을 검역·당국에 전화로 통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통보는 회수문, FAX 또는 텔렉스의 문장에 근거해야 하며, 구두 통보의 확인으로서 항상 보내야 한다.

제품이 소매점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한 회수의 경우 스폰서는 완벽하고 정확한 유통의 목록이 이용될 수 없는 곳의 유통에서는 각 주/지역의 일간 인쇄 매체에 유급 그리고 인정된 광고를 가능한 한 빨리 게재한다.

소비자로부터의 회수의 경우 스폰서는 유통되고 있는 각 주/지역의 일간 인쇄 매체에 가능한 한 빨리 유급, 그리고 인정된 광고를 게재한다. 스폰서는 연방 조정관과 문

구에 관해 의논한 후 도/소매업자에게 유통에 대한 회수문을 준비해야 한다.

스폰서는 도매업자에게 회수에 대해 권고를 계속해야 한다, 회수는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반환물품을 취급하고 대체품을 보내는데 도매업자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될 것이다.

스폰서는 연방조정관에게 상세한 정보를 기록한 회수의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III. 호주의 식품회수관련법

1986년 호주거래법(Trade Practices Act 1974)개정안은 자발적회수와 강제회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발적회수와 강제회수는 호주거래법 Part V, Division 1A(제품의 안전과 정보)에 규정되어 있다.

호주거래법은 식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회수시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소비자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 회수를 조정하기 위해 거래법 제7(h)와 7(i)조는 호주국립식품청(NFA)에 식품회수를 위한 조정의 역할을 부여해 주고 있다. 즉 효율적이고 전국적인 표준화된 식품회수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호주국립식품청이 식품산업체, 소비자부와 주/지방 보건국 사이에서 회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은 회수와 관련된 거래법 조항을 살펴보고 호주의 각 주/지방정부마다 강제적인 회수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제공하여 주는 법조항들을 살펴본다.

1. 거래법(Trade Practices Act 1974)

호주국립식품청은 식품회수에 대한 법적 권한도 없으며 영업자에게 위해 식품을 강제로 회수토록 하는 강제력도 없다. 그러나 거래법 제7(h)와 제7(i)조는 호주국립식품청에 식품을 회수하는데 조정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즉 효율적으로 전국적인 표준화된 회수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호주국립식품청이 식품산업체, 소비자부와 주/지방 보건국 사이에서 회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

하고 있다.

거래법 제65R조는 자발적회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위해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를 결정한 영업자는 회수개시 2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비자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통지는 반드시 상품이 회수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며 제품의 결함이나 위험한 독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장관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벌칙이 가해진다. 본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회사는 \$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위반에 연루된 각 개인은 \$ 2,000의 벌금과 최대 12개월까지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거래법 제65F조는 소비자부 장관이 안전에 관련된 위해로 인한 소비자 제품의 회수를 영업자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다. 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제품안전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금지된 소비자제품, 사람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또는 영업자가 위해를 방지할 만족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장관은 영업자에게 강제회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영업자로 하여금 통고에 명시된 기간내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하며 위해의 성질과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제품이 수리, 대체, 환불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거래법 제65F(7)조는 수출된 제품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회사는 회수되고 있는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수령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서에는 반드시 상품이 회수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위험한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의 성질을 설명하고 제품이 소비자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통지문이나 텔렉스 내용을 보내고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소비자부 장관에게 제공하며, 이를 위반시는 앞의 65R에 대한 벌칙과 동일하다.

거래법 제65F(1)조는 영업자가 사람에게 해를 주는 제품을 방지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장관은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장관의 회수명령은 회수방법과 기간을 지정하며, 영업자가 이러한 제품의 위해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적절할 때 장관은 영업자에게 제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 혹은 교환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본 조항에서 소비자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진 제품의 강제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영업자가 계속 공급한다는 것은 범법행위이며 강제회수명령을 위반할 때의 최대 벌칙은 회사의 경우 \$ 200,000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위반에 연루된 각 개인은 \$ 40,000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거래법 제65C조는 만약 제품이 사망, 심각한 질병이나 상해 등의 긴급한 위해를 일으켰다면 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품의 긴급회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품의 위해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자는 거래위원회(Trade Practices Commission)를 열기전의 회의에서 회수를 명령하기 위한 장관의 제안에 대하여 토의할 기회를 가진다.

거래법 제65L조는 상품이 사망, 심각한 질병이나 심각한 상해와 같은 긴급한 위험을 초래한다면 장관이 상품의 즉각적인 회수를 명령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위험이 긴급하지 않다면 영업자는 거래위원회(Trade Practices Commission)로 가기 전의 회담에서 회수를 명령하는 장관의 제안을 토론했 기회를 갖는다.

2. 강제회수를 위한 각 주·지방의 법제도 (Legislative basis for mandatory recall)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회수는 자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자발적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각 주/지방마다 강제회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음은 각 주의 회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률과 그 조항들을 살펴본다.

주 또는 준주 (State or Territory)	회수의 법적근거(Recall Powers)
<p>NSW</p> <p><u>관련사항</u></p> <p>공중보건과 안전의 심각한 위험</p> <p>식품의 압수, 격리, 폐기</p> <p>시행명령은 문서로 하거나 관보에 실을 수 있다.</p> <p>항 소</p> <p>회수된 식품을 격리시켜야 한다. 벌금이 부여된다.</p>	<p><u>법률(Legislation)</u></p> <p><u>식품법 1989(Food Law 1989)</u></p> <p>Part 4. S. 44 : 감독관(Director General)의 특별권한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공중보건과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완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이 행정명령을 부여한다.</p> <p>67(c) 감독관은 판매를 위해 유통된 식품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식품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즉, 감독관은 식품의 압수, 격리, 폐기를 지시할 수 있다.</p> <p>행정명령은 서면으로 관계인에게 보내지거나 관보에 실릴 수 있다.</p> <p>행정명령은 제출되거나 고시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고시된 규정들은 철회되지 않는다면 90일 동안 효력을 발생한다.</p> <p>항소는 지역 법정에 행정명령에 대해 21일 이내에 할 수 있다.</p> <p><u>규정(Regulation)</u></p> <p><u>식품의 일반규정 1992(Food(General) Regulation 1992)</u></p> <p>회수된 식품은 확인되어 격리, 폐기, 혹은 처분된다. 벌칙이 적용된다.</p> <p><u>절차(Procedures)</u></p> <p>포괄적인 회수절차가 있다. 표준 포맷 faxes가 통고를 위해 사용된다. 소비자부는 “NSW에서의 제품안전성 회수 지침서”를 출간하였다.</p>

주 또는 준주 (State or Territory)	회수의 법적근거(Recall Powers)
<p>QUEENSLAND</p> <p>사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건강에 유해한 식품</p> <p>식품이 회수되거나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경우</p>	<p>법률(Legislation)</p> <p><u>Food Standard Regulation 1994</u></p> <p>유해한 식품의 회수와 처분을 다루는 Regulation 13에서 식품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하거나 건전하지 않은 경우에, 보건담당관은 식품 소유자나 그 식품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식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또는 그렇지 않으면 처분하라는 서면 지시서를 보낼 수 있다.</p> <p>지시서는 식품의 소유자나 식품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지고 회수되거나 파괴 또는 처분되도록 지시한다.</p> <p>벌칙이 적용된다.</p> <p>절차(Procedures)</p> <p>상세한 임시절차안이 마련되어 있다. NFA의 역할이 포함된다.</p>
<p>ACT</p> <p>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판매중인 식품은 회수될 것이다,</p>	<p>법률(Legislation)</p> <p><u>Food Act 1992</u></p> <p>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판매중인 식품은 Director of Public and Environmental Health Service하에 회수가 개시되어 판매를 막을 수 있다.</p> <p>절차(Procedures)</p> <p>회수는 상술된 절차로 다루어 지는데, 이는 NFA를 포함한다. 강제적인 회수는 영업자가 회수활동을 행할 것을 꺼린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고려된다.</p>
<p>VICTORIA</p>	<p>법률(Legislation)</p> <p><u>식품법 1984(Food Act 1984)</u></p>

주 또는 준주 (State or Territory)	회수의 법적근거(Recall Powers)
	<p>전제사항을 달지 않을 권한. 회수통지 절차가 강제적인 회수를 의미하는지 자발적인 회수에 국한되는지 불확실한 경우</p> <p>절차(Procedures)</p> <p>NFA를 포함한 전국에 걸친 회수절차</p>
<p>TASMANIA</p> <p>식품이 건강에 해를 주고 서면 통지에 의해 판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수, 폐기 또는 전용</p>	<p>법률(Legislation)</p> <p><u>Public Health Act 1962</u></p> <p><u>Public Health(Food Standards Regulation) March 1994</u></p> <p>S. 6하에 Director가 식품이 손상되고 오염되고, 매마르고 오염되거나 썩었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해를 준다는 근거있는 문제를 믿는다면 판매자, 제조업체, 포장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서면 통지서에 의해 식품을 회수, 폐기 또는 전용할 것을 요구받는다. 통지는 벌칙이 부여된다.</p> <p>절차(Procedures)</p> <p>다른 절차는 없다.</p>
<p>SOUTH AUSTRALIA</p> <p>식품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판매, 이동, 처분이 금지되고, 폐기된다.</p> <p>광고가 요구될 수 있다.</p>	<p>법률(Legislation)</p> <p><u>식품법(Food Law)</u></p> <p>S.25하에 식품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위원회는 판매를 금지하고 이동이나 처분을 제한하거나 식품의 파괴를 요구한다.</p> <p>S.27하에 위원회는 제조업체, 수입업자, 도매상 또는 소매 판매자에게 식품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광고하도록 할 수 있거나 자체에서 광고를 발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벌칙을 수반한다.</p>

주 또는 준주 (State or Territory)	회수의 법적근거(Recall Powers)
<p>제조업체의 회수를 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은 없다.</p>	<p>제조업체에 회수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은 없다. 소비자에게 부적당한 식품은 사람이 소비하기에 부적당한 식품(예를 들면 표준치를 넘는 cadmium의 최저수준)이나 labelling 위반의 원인이 확인될 수 없는 “기술적”표준을 포함하지 않는다.</p> <p><u>식품위생법 1990(Food Hygiene Regulations 1990)</u></p> <p>회수된 식품은 반드시 격리되어 다시 판매될 수 없다.</p> <p>절차(Procedure)</p> <p>제조업체는 NFA Food Recall Protocol을 참조한다.</p>
<p>WESTERN AUSTRALIA</p>	<p>Health Act 1911, Section 246ZA는 식품회수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한다.</p> <p>절차(Procedures)</p> <p>NFA를 포함한 전국적인 회수절차</p>
<p>NORTHERN TERRITORY</p>	

IV. 회수전략요소

회사는 소비자, 소매 또는 도매 범위로부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품회수에 착수하기 위하여 제품 회수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연방 조정관에게 통고할 때 스폰서는 회사의 회수 전략을 조언해야 한다.

각각의 회수가 독특하다 하더라도 모든 회수에 공통요인들은 전략개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요인들은 제품에 발생될지 모르는 결점의 특징, 불만을, 소비자 안전, 유통망, 회수절차, 제품의 대상시장, 수정조치에

대한 방책과 대안 제품의 유효성을 포함한 다. 회수회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상세한 전략을 준비한다: 회수 목적의 설명; 위험가능성에 대한 검증과 정의에 대한 메커니즘; 제품회수에 사용되는 전달시스템과 회수시스템; 위해 평가절차; 매체보도를 위한 초안 작성.

1. 회수 형태

가. 자발적회수(Voluntary product recalls)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위해식품을 회수하는 형태

나. 강제회수(Compulsory product recalls)

법에서 정한 제품의 강제안전기준에 따르지 않은 제품, 금지된 제품,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또는 영업자가 상해를 막기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즉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수형태. 호주의 소비자장관은 안전에 관련된 위험을 갖는 제품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2. 회수분류

회수분류는 제품이 사용자에게 해를 주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Class 1 또는 Class 2로 결정된다. 위해가 중대한 경우 응급(Class 1)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심(Class 2)으로 분류된다.

회수분류는 스폰서와 연방 조정관과의 협의하에 결정되며 때로는 주/지역 조정관과의 협의도 거칠 수 있다. 위해의 성질이나 중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결정한다.

가. Class I 회수-긴급상황

제품의 사용이나 소비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사망하게 할 정도의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Class I 회수가 발효될 수 있다.

긴급 회수의 원인이 된 상황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Clostridium botulinum*, *Listeria monocytogenes*와 같은 중요한 미생물에 의해 오염된 식품, 독성 물질 또는 이물질에 오염된 제품, 가짜 또는 허위 제품.

나. Class II 회수-우려상황

제품이 잠재적인 건강위해를 내포하는 심각한 결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Class II 회수가 발효될 수 있다.

3. 회수범위

회수분류와 마찬가지로 회수의 범위도 스폰서, 연방 조정관, 필요한 경우 주/지역 조정관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회수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위해의 중요성, 제품의 유통경로, 유통 진행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위해의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회수범위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범위로 나누고 있다.

가) 도매수준 : 도매업자, 유통센터, 수입업자로부터 제품회수

나) 소매수준 : 슈퍼마켓, 식료품가게, 병원, 식당 및 다른 주요 음식공급 시설, 체육관 그리고 기타 소매점등 사가지고 가는 요리를 파는 가게 및 건강식품점으로부터의 제품회수

다) 소비자수준 : 회수범위를 소비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가장 중대하고 폭넓은 형태의 제품회수

4. 회수효과 검토

스폰서는 효과적으로 회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곳까지 통보를 전달하여야 하며, 회수효과는 이 제품의 소매거래액을 고려하여 회수된 제품의 양을 제조업자에게 남겨진 제품의 양에 대한 백분율로서 평가된다.

V. 식품회수절차

식품회수절차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게 하는데 있다. 각각의 제품, 회사, 회수 상황이 다르므로 상세한 표준 절차가 권

고될 수는 없으므로 각 회수회사는 자신에 맞는 구조와 활동에 따라 나름대로의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지침서에 있는 회수절차는 다음 항목에 역점을 두어 다루고 있다: 회수분류에 관한 정의, 위해평가, 회수위원회 위원, 위원회 회원의 역할, 절차 이행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참고 정보, 유통 network와 고객에 대한 통고 방법, 대중에 대한 통고 방법.

각각의 회수절차는 <그림 1>에 개략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해야 하며 회수절차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제품 회수 계획의 개발

가. 목적

제품회수 계획의 중요한 목적은 가능한 빨리 영향을 받은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중지하고, 문제에 대해 관련 당국과 사회에 통고하며,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시장으로부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수하는데 있다.

회수계획서는 준수하여야 할 설정된 절차를 열거하고 개개인의 역할을 명시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기준서로서 활용된다.

스폰서는 국립식품청의 연방조정관에게 그들의 제품 회수 계획의 사본을 제출한다. 그러나 대부분 문서가 길고 관련회사와 특별히 연결되어 있을 때는 호주국립식품청은 오로지 각 회사에 회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제출을 권장한다.

제품회수 계획서의 세부사항은 회사이름, 담당자 이름, 지위, 주소, 24시간 가능한 전화/FAX번호, 회사에 의해 스폰서된 식품의 형태 및 관련 상표 등을 포함한다.

나. 절차

제품, 회사, 회수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상세한 표준절차는 권고될 수는 없으나, 각 스폰서는 특유의 구조와 활동에 맞는 나름대로의 절차를 개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절차는 <그림 1>에 약술한 주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수절차에서 다뤄져야 할 항목들은 다음

과 같다.

1) 회수분류: 회수는 정의에 따라 분류 하되 대중통보는 긴급 상황에 필수적이거나 우려 상황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회사내 회수위원회 위원: 경영진은 회수에 관련된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임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수조정관(대개는 회사의 기술 전문 중역진이 회수조정관이 된다), 경영이사, 홍보 책임자, 창고와 유통 책임자, 구매 책임자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작은 회사의 위원회는 여러 업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1~2명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3) 위해성 평가: 상세한 지침서는 위험 문제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위원회를 돕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역할: 개개의 전문 분야에 대한 특정 역할이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회수조정관은 국립식품청의 연방 조정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홍보책임자는 매체 진술서를 준비해야 하는 등을 명시한다.

5) 유통망과 의뢰인에 대한 통고방법: 유통과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된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제품의 파기 또는 격리를 위한 각 절차의 통보를 유통업자와 의뢰인에게 어떻게 할지 자세히 설명한다.

6) 대중에 대한 통고방법: 계획은 매체의 어떤 형식을 사용할 지와 주요 교섭이 어떻게 통보되어야 하는지를 열거해야 하며, 주요 절차안에는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주요 참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전화연락처목록; 회사주요임원, 연방 정부, 주/지방건강당국과 연락매체
- 공급자 목록, 유통업자와 의뢰인
- 언론통보
- 위해가능식품의 통보양식

2. 회수의 통고 또는 개시

회수는 스폰서와 조정관에게 보낸 보고서의 결과로 시작된다. 보고서는 제조업자, 도

매업자, 소매업자, 개업의, 정부기관 및 소비자에게 회부될 것이다.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의 회수는 또한 해외 정기 보고서(공보) 및 보건국의 유사간행물 또는 이러한 당국으로부터 직접 받은 보고서에 의해 착수된다. 공중 위생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주/지역 법령은 제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적 경고문을 낸다.

어떤 정보는 상황에 적절한 조치와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위해 가능식품 통고"양식의 사본은 자료 1과 같다. 이 양식은 정식으로 조정관이 보건국에 문제를 보고하는데 사용된다.

위해 가능성 정보와 주/지역에 의해 제안된 조치와 공중 위생과 안전 위협에 대한 의견은 주/지역 조정관에 의해 연방조정관에게 보내져야 한다. 위급의 경우 이 정보는 전화로 알려거나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수의 필요성이 입증됐을 때 추가 정보는 적절한 회수전략을 고안하는데 필요하다. 필요한 정보의 요약은 절차중 회수 평가시 필요한 정보수집에 명시했다.

3. 소비자부 장관에게 통고

거래법(Trade Practices Act 1974) 제65R 조는 사람에게 상해나 발병 또는 죽음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와 같은 안전관련 이유로 제품을 회수하는 스폰서에게 회수개시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방소비자부 장관에게 회수 대상 제품의 상태와 제품의 결점 또는 유해성 등을 통보할 법률상의 책임을 두고 있다.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벌금을 정해놓고 있으며 법인은 \$10,000 벌금을 과하고 위반에 연루된 개인은 \$2,000 또는 1년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동법 제65F(7)조는 수출된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회사는 회수된 제품의 해외 수령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제품이 회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만약 제품이 결함을 갖고 있

거나 위해요소가 있을 때 혹은 전술한 소비자제품의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문제의 성질을 설명한다. 회사는 이러한 통지문이나 텔렉스 내용을 보내고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소비자부 장관에게 제공한다. 제65F조의 위반에 대한 벌금은 제65R조의 위반시의 벌금과 같다.

통지서는 반드시 상품이 회수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문제의 성질을 설명하거나 준수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수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었음을 장관에게 통지하기 위해 제품회수감사가 수행되며 따라서 공급자는 안전 관련 회수에 관하여 보존된 적절한 문서증거와 기타 서류기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 회수 평가시 필요한 정보수집

회수는 스폰서에게 보낸 보고서 또는 제조업체, 도매상, 소매상, 개업의, 정부기관과 소비자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정관에 보낸 보고의 결과로 시작될 수도 있다. 해외에서 제조된 상품의 회수는 해외 bulletins와 건강당국의 유사한 발표가 나타난 보고에 의해 혹은 해당 당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정보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대중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에 관한 의견과 주 또는 준주에 의해 제안된 조치와 함께 잠재적인 위험에 관한 정보는 주 또는 준주 조정관에 의해 호주 연방조정관에게 보내진다. 긴급한 경우에 이러한 정보는 전화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수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을 때 적절한 회수전략이 고안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스폰서는 제품의 세부내역, 유통과 제안된 조치를 포함하여 유해가능성이 있는 식품통보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모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방조정관은 스폰서가 모든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의 일부(예. 벳취크기, 유통망과 유통량)는 스폰서에게만 알려지며 이러한 정보들은 회수상황에서 곧바로 이용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수조정관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통보하여 제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한다.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제품에 대한 정보

- 1) 제품이름과 포장크기, 형태 등의 기재사항
- 2) बैच्ची 또는 포장날짜
- 3) 유효기간 또는 포장날짜(관련된 경우)
- 4) 제조업자/호주Sponsor와 연락전화번호
- 5) बैच्ची량, 날짜, 방출된 양
- 6) 국내유통
- 7) 호주에서 수출된 제품의 해외 유통

나. 문제에 대한 정보

- 1) 문제를 보고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 2) 보고 날짜
- 3) 문제의 특성
- 4) 입수된 유사보고의 수
- 5) 혐의 대상 또는 다른 샘플의 시험과 기타 조사결과
- 6) 기타 관련요인

다. 다른 관련 정보

- 1) 의심이 가는 샘플이나 기타 샘플의 조사에 대한 유효성
- 2) 위해의 형태 및 위해의 평가
- 3) 스폰서에 의해 제안된 조치
- 4) 제안된 회수분류
- 5) 제안된 회수수준

만약 호주국립식품청에 제공되는 일부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하거나 비공개적일 경우 회수회사는 당국에 알려야 한다. 국립식품청법(National Food Authority Act 1991) 제3조에 정의된 것처럼 정보의 기밀성은 기밀한 상업정보일 경우 동법 제39조에 의해 특별히 기밀이 유지된다.

국립식품청은 연방정부기관이므로 연방정부 행정법을 받으며 이는 국립식품청의 조치가 대중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FOI Act)은 당국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법적으로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문서가 법령에 명시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국립식품청은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5. 회수평가

회수분류는 제품이 사용자에게 해를 주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해가 중대한 경우 Class I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Class II로 분류된다. 이러한 회수분류는 영업자, 연방조정관 때로는 주/준주 조정관 사이의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되며 위해의 성질이나 중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회수범위도 이들사이의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되며 위해의 중요성, 제품의 유통망, 유통범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6. 회수문, 유급광고와 대체보도

가. 회수문, 팩시밀리 또는 텔렉스

회수에 대한 최초의 통고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다음은 문서로 전달된다. 유통업자와 해외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회수문은 제품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특정 세부사항과 함께 제품의 회수이유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회수문의 내용은 급송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연방조정관의 동의를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로 보내질 편지는 연방조정관과 협상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발송되어야 하며 반드시 회수개시 48시간 이내 보내져야 한다.

회수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표제: 회수분류가 응급이라면 제목은 “긴급식품회수(Urgent Food Recall)”, 회수가 일상적인 것으로 분류된다면 “식품회수(Food Recall)”이라는 표제를 써야한다.

2) 발송문의 구성내용: 회수문의 내용은 다음 각각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제품의 이름
- 포장의 크기 및 표시사항
- बैच्ची 및 일련번호
- 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 회수이유, 위해특성과 소비의 영향
- 제품을 동정하고 검역할 필요성
- 사용할 회수(필요한 경우 폐기)방법 또는 제품 수정방법
- 케이스 제품이 운송중일 때 1달 동안 눈에 잘 띄는 곳에 회수문이 부착되도록 요구
- 제품의 유통

만약 대중의 안전이 문제되어 유통이 제한될 경우 상기에 목록된 정보는 전화로 전달된 다음에 회수문을 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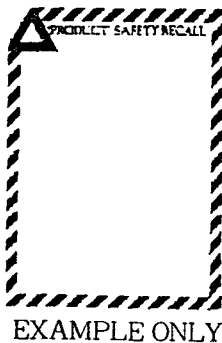
회수된 제품이 제한된 수의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유통되어 있으며 그 제품이 또 다른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유통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편지는 다음의 설명이 포함된다. 즉, “회수된 제품의 어느 정도가 당신에 의해 다른 유통업자/소매업자에게 좀 더 유통되었다면 즉시 유통업자/소매업자에게 회수에 대해 알리고, 우리가 당신의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유통업자/소매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게 아래에 적힌 것 중에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 전화연락해 주십시오. 장거리전화는 수신자 부담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유급광고

회수가 소비자 수준인 경우 또는 모든 소매점이 규명될 수 없는 소매업자 수준일 경우에 스폰서에 의해 지불되는 광고는 유통이 된 각 주/준주의 매일 발행되는 매체에 기재된다.

1) 인쇄매체의 선택

Box 1. 일간인쇄매체의 식품회수광고 견본



인쇄매체의 선택은 연방 조정관과 특정한 주/지역 조정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방 조정관은 각 주/지역의 주요 신문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매체와 지역 신문에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2) 크 기

광고를 위한 최소 크기는 길이 10센치 폭의 2중 column이고 가장자리를 대각선으로 빗금 줄친 것으로서 태를 돌려야 한다.

3) 위 치

광고는 선택한 각 매일 발행되는 매체의 처음 5페이지 중 한 페이지에 게재한다.

4) 본 문

발행하기 전에 확인을 위해 연방 조정관에게 제출한다.

5) 표 계

Class 1인 경우 “긴급 회수”

Class 2인 경우 “식품 회수”

6) 발송문의 구성

- 제품명
- 포장의 크기와 표시사항
- 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른 세부사항
- 회수 이유
- 제품을 확인하고 검역할 필요성
- 사용될 제품의 수정, 폐기, 회수방법
- 소비자에게 위험이 심각할 경우 바람직하다면 임상징후의 표시와 개업의의 조언

다. 언론보도

회수를 시작하는 스폰서는 회수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언론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공개는 유급광고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영업자와 관련 주/준주 조정관과 연방 조정관에 의해 연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개업이나 다른 전문가의 충고가 필요하다면 주/준주 기관이 이를 도와 주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24시간 이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스폰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7. 제품수거

제품은 슈퍼마켓, 유통체인을 거치거나 소비자로부터 직접 반환에 의해 수거된다. 제품은 정해진 한 장소 또는 제품이 널리 유통된 경우에는 여러 회수장소에 수거되며 수거된 제품은 다른 제품과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거된 제품의 양과 코드를 정확히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거후 소비에 적당하면 제품은 수정되거나 재처리될 것이나 만약 적당치 않다면 제품은 주/준주 보건국의 감독하에 파기된다.

가. 회수후 보고

회수를 실행하고 난 후 1~2달 사이 간격으로 스폰서는 연방 조정관에게 회수에 관한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소비자에 대한 회수문(또는 팩시밀리) 사본
- 2) 회수하게 된 상황
- 3) 만약 신문에 광고를 냈다면 이름과 함께 광고를 포함한 스폰서에 의해 취해진 조치
- 4) 호주와 해외에서 관련 벤틀의 유통 범위
- 5) 회수의 결과(반환된 제품의 양, 수정, 미해결 등)
- 6) 회수 제품에 대하여 파기를 증명할 수 있는 폐기방법이나 기타 방법
- 7)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이행할 제안된 조치

이러한 보고서는 회수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주/준주 조정관과 연방소비자국에 대한 보고서의 근간을 이룬다. 만족할만한 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후속 조치가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회수 조치의 효율성

회수 통보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곳까지 효율적으로 도달되어야 한다. 회수효과는 이 제품의 소매액을 참작하여 수납된 제품의 양을 제조업자에게 남겨진 제품양의 백분율로써 평가된다.

8. 후속조치

가. 회수조치의 효과에 대한 검토

국립식품청과 함께 연방소비자부는 회수에 대한 감사를 지도할 수 있다. 검사될 영업자의 관련 기록을 조정하기 위해 사전통고를 하며 회수조치에 대한 효과가 평가된다.

나. 회수이유에 대한 조사와 개선조치 개시

회수종료시 스폰서는 회수의 원인이 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책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의 성격과 개선조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립식품청은 이를 조사하거나 모범제조규범(Good Manufacturing Practice)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제품의 재검토 등의 감사를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는 국립식품청과 함께 연방소비자국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방이나 주/준주 보건국이 아닌 개인 또는 기관에 의한 보고로 착수된 회수의 경우 해당개인 또는 기관은 회수상황과 조사 결과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인은 보고서가 만들어진 주/준주 보건국의 조정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스폰서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표시로서 보고자에게 조언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자료1. 위해가능식품의 통보양식

• 발행당국 :

• 연락사무소 :

• 전화번호 :

• Fax :

• 회사에 보고 날짜 :

• NFA 통보날짜 :

식품형태 :

• 상품명 :

• 제품크기 :

• 날짜표기 :

• Batch 코드 :

• 위해제품의 수량 :

위해특성 :

• 어떤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가 :

• 결과 :

유통 :

• 호주 :

• 해외 :

제안된 조치 & 조치사항 :

기타 관련정보 :

그림 1. 제품회수계획

